

2020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

심 사 보 고 서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760 |
|----------|------|

2020년 9월 15일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: 2020. 8. 12.

2. 제안자 : 서울특별시장

3. 회부일자 : 2020. 8. 21.

4. 상정일자 : 제29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폐회중

○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(2020. 9. 10.)

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원안가결

Ⅱ. 제안설명의 요지 (기획조정실장 조인동)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당초 의결했던 기금 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% 이상 초과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의안번호 제1760호 『2020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』은 2019년 결산결과 예치금 회수 수입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용자 지원 확대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*을 반영하였음
- 일반회계 전입금(522억원) : 코로나 19 긴급 자금(예비비 : 50억원),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(제2차 추경 : 462억) 등 이에 따라 당초계획 2,720억 8천 1백만 원에서 1,214억 8천 9백만 원이 증가한 3,935억 7천만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

Ⅲ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엄지운)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1760호, **2020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0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2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

(1). 제안이유

- 가.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 11조 규정에 의거, 2020년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(2). 주요내용

- 가. 2019년도 결산결과 예치금과 결산 지적사항, 2020년도말 지출 예정액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
- 나.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서울소재 중소기업, 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 용자 지원 확대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편성

○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조정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| 정책/세부사업 | | 당초(A) | 변경(B) | 증감 (B-A)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
| 합계 | | 272,081 | 393,570 | 121,489 |
| 중 소 기 업 금 융 지 원 | | 260,648 | 314,280 | 53,632 |
| | 중 소 기 업 직 접 융 자 | 215,000 | 265,000 | 50,000 |
| | 시중은행협력자금지원 | 44,820 | 47,320 | 2,500 |
| | 기타비용자성사업비 | 828 | 960 | 132 |
| | 기금업무대행수수료 | | 1,000 | 1,000 |
| 재 무 활 동 | | 10,433 | 78,590 | 68,157 |
| | 재정투융자기금원리금예수금상환 | 2,618 | 2,618 | - |
| | 여유자금예치 | 7,815 | 75,972 | 68,157 |
| 행 정 운 영 경 비 | | 1,000 | 700 | △300 |
| | 기 금 관 리 비 | 1,000 | 700 | △300 |

다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(단위 : 백만원)

(단위 : 백만원)

| 수 입 계 획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항목 | 당초 | 변경 | 증감 |
| 합계 | 272,081 | 393,570 | 121,489 |
| 융자금회수 (이자포함) | 174,045 | 174,045 | |
| 공공예금 이자수입 | 3,000 | 3,000 | |
| 예치금회수 | 76,036 | 145,325 | 69,289 |
| 일반회계 전입금 | 19,000 | 71,200 | 52,200 |

| 지 출 계 획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항목 | 당초 | 변경 | 증감 | |
| 합계 | 272,081 | 393,570 | 121,489 | |
| 사 업 비 | 융자금 | 215,000 | 265,000 | 50,000 |
| | 이차보전금 | 44,820 | 47,320 | 2,500 |
| | 기타비용자성 사업비 | 828 | 960 | 132 |
| | 기금 업무 대행수수료 | - | 1,000 | 1,000 |
| 재 무 활 동 | 예치금 | 7,815 | 75,972 | 68,157 |
| | 예수금 이자 | 2,618 | 2,618 | - |
| 행정운영경비 | | 1,000 | 700 | △300 |

3. 검토의견

- 서울시는 지난 3월,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코로나19 대응관련 서울소재 중소기업,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지원을 확대하고자 일반회계중 **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**(652억원)을 당초보다 462억원 증액 편성한 바 있음
 - 동 계정의 경우, 기금운용부서가 지난 3월,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경예산으로 증액된 462억원을 동 계정의 수입계획중 전입금으로 수입계획을 변경하고,
 - 수입계획 증가에 따라 지출계획도 연동하여 **중소기업 금융지원**(고유목적사업비)의 지출금액을 당초(2,606억 4,800만원)보다 17.7%, 462억원 증액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으나
 - 관련 법령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됨
-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‘전년도 결산에 따라 기금 예치금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어’
 - 지난 '19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잉여금(692억 8,900만원)의 경우에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(692억 8,900만원)에 계상하고, 지출계획에는 예치금(681억 5,700만원)과 고유목적사업비(11억 3,200만원)로 계상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됨
-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3월과 8월,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으나 정책사업간 지출계획을 일부 증·감 조정하기

위한 것으로

- 지난 '19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“정책사업”에는 재무 활동, 행정운영경비까지 모두 포함됨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있어 일부 개선이 필요한 점을 지적한 바 있어

- 기금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의회의 의결취지를 존중하고자 정책 사업간 일부 증·감 조정을 요청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사료됨

○ 동 계정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①**중소기업 금융 지원**(고유목적사업비)은 당초보다 20.6%, 536억 3,200만원이 증가하고, ②**재무활동**(예치금)은 당초보다 653.3%, 681억 5,700만원이 증가하며 ③**행정운영경비**는 당초보다 △30.0%, △3억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지출계획 하는 것으로

- 관련 법령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동 계정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의회로부터 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바,

- 동 계정의 설치목적 등을 고려할 때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과 전입금을 지출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○ 다만, 동 계정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위해 의안을 제출한 것임에도 당초 의결된 결과와 비교하여 변경 규모가 몇 % 차이가 있는지 일체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있어

- 동 안건을 심사·의결하는 의회가 제출된 의안에서 해당 변경규모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는 사안인지 각각 계산하고, 판단하라는

것으로 오해될 소지도 있어 향후 동 지출계획변경안과 같은 행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생략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2020. 9. 10.)

2020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760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 11조 규정에 의거, 2020년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2019년도 결산결과 예치금과 결산 지적사항, 2020년도말 지출 예정액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
나.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서울소재 중소기업, 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 용자지원 확대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편성

○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조정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| 정책/세부사업 | 당초(A) | 변경(B) | 증감 (B-A)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|
| 합 계 | 272,081 | 393,570 | 121,489 | |
| 중소기업 금융지원 | 260,648 | 314,280 | 53,632 | |
| 중소기업직접융자 | 215,000 | 265,000 | 50,000 | |
| 시중은행협력자금지원 | 44,820 | 47,320 | 2,500 | |
| 기타 비용자성 사업비 | 828 | 960 | 132 | |
| 기금 업무대행 수수료 | | 1,000 | 1,000 | |
| 재무활동 | 10,433 | 78,590 | 68,157 | |
| 재정투융자기금원리금 예수금상환 | 2,618 | 2,618 | - | |
| 여유자금 예치 | 7,815 | 75,972 | 68,157 | |
| 행정운영경비 | 1,000 | 700 | △300 | |
| 기금관리비 | 1,000 | 700 | △300 | |

나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(단위 : 백만원)

| 수입 계획 | | | | 지출 계획 |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항목 | 당초 | 변경 | 증감 | 항목 | 당초 | 변경 | 증감 | |
| 합계 | 272,081 | 393,570 | 121,489 | 합계 | 272,081 | 393,570 | 121,489 | |
| 융자금회수 (이자포함) | 174,045 | 174,045 | | 사업비 | 융자금 | 215,000 | 265,000 | 50,000 |
| 공공예금 이자수입 | 3,000 | 3,000 | | | 이차보전금 | 44,820 | 47,320 | 2,500 |
| | | | | | 가변이자성사업비 | 828 | 960 | 132 |
| 예치금 회수 | 76,036 | 145,325 | 69,289 | | 기금 업무대행 수수료 | - | 1,000 | 1,000 |
| | | | | 재무활동 | 예치금 | 7,815 | 75,972 | 68,157 |
| 일반회계 전입금 | 19,000 | 71,200 | 52,200 | | 예수금 이자 | 2,618 | 2,618 | - |
| | | | | 행정운영경비 | 1,000 | 700 | △300 | |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<이하생략>

○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나. 예산조치 : 조치완료 ('20년 1회·3회 추가경정예산 및 예비비)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팀 김은하 (☎2133-5190)